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53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진선미・이학영・임오경

최기상 · 김문수 · 문정복

이기헌 · 이광희 · 조승래

강경숙 • 박성준 • 정준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 ·운영되고 있음.

그런데,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근 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,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나 기관 간 역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.

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・군

·구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 ·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 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 임(안 제16조, 제16조의2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 "(지역진로교육센터)"를 "(시·도진로교육센터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지역실정에"를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실정에"로, "지역진로교육센터를"을 "시·도진로교육센터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역진로 교육센터의"를 "시·도진로교육센터의"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)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·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·군·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,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,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, 진로체험 운영·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구성·운영 및 전 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"를 "시·도의"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·도진 로교육센터로 본다.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의3 중 "지역진로교육센터"를 "시·도진로교육센터"로 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6조(시 · 도진로교육센터) ① -제16조(지역진로교육센터) ① 교 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 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 -----특별시·광역시·특별 정보 제공, 진로심리검사 및 진 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(이하 로상담 제공, 진로교육 콘텐츠 "시·도"라 한다)의 실정에----개발 · 보급, 진로체험 운영 · 지 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 -----시·도진로교육세 육센터를 설치 · 운영하거나 전 터를----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 ② -----시·도진로교육 센터의 구성・운영 및 전담기 센터의-----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신 설> 제16조의2(시・군・구진로체험지 원센터) ① 교육감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 른 시 · 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 하여 시・군・구의 실정에 맞 는 진로정보 제공, 진로심리검 사 및 진로상담 제공,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,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 제22조(진로교육 콘텐츠) ① (생 후 략)

② 교육부장관은 <u>특별시·광역</u> 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교 육청,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 로교육 콘텐츠를 개발·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	•	군	. 3	구진]로	체	험 기	[] 원	센	터	를
	<u>설</u> :	치	• 선	2 영	하기	나		전딩	<u>ま기</u>	관	을
	<u>지</u>	정경	하 O	1 5	<u> </u>	할	수	있ા	<u> 구.</u>		
4]	2	저]1ই	낭에	따	른	시	• -	근 •	구	<u>진</u>
	로:	체호	험ス	l 원	센티	리의		구성	तुं •	운	영
	<u>및</u>	전	[담	기 된	간의	지	정	등	에	필	요
	<u>한</u>	사	항-	은	조리]로	정	한1	<u> 구.</u>		
	223	조(진.	로ュ	2육	콘	텐.	호)	1	(현
	행.	과	같	음)							
	2	_								- <u>시</u>	•
	<u>도</u>	의-									